제1013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(신설) ㅇ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, 기준,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ㅇ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–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 선정(안 제4조) ㅇ 소명기회 부여 –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(안 제5조) ㅇ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 –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,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 미제출,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결정(안 제6조) ㅇ 공개 방법 –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(쇼핑몰명), 도메인, 민원내용 등을 공개(안 제7조) ㅇ 공개 기간 –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 공개. 다만,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 종료(안 제8조) ▶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전체	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	1.자사주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(신설) ㅇ 자기주식 취득, 보유, 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주식 취득, 보유, 처분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조치기준을 마련함 ▶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별표3	비중요
3	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	1.설계기준 강화(시방기준, 성능기준)(강화)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(5백m2 이상) 중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방기준 중 일부 항목을 의무화하고, 성능기준도 시방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설계기준(시방기준, 성능기준) 강화 ▶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▶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, 제21조	비중요
4	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사륜형 이륜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 기준(신설) ㅇ 사륜형 이륜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시, 세부기준을 규정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, 제113조	비중요
5	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의 응시자격(신설) ㅇ 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‘전문항공교통관제사’ 자격증명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전의 ‘항공교통관제사’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일정 기간(3개월) 이상 관제실무 경험을 갖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 ▶항공안전법 제34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 심사(신설) ㅇ 개정「항공안전법」제38조의2에 따라 신설되는 '기량심사' 제도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'전문항공교통관제사'의 최근 경험과 기량 유지를 위한 각종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구체화 ▶항공안전법 제.38의2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	비중요
		3.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(신설) ㅇ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, 한정심사 절차 등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 관리코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마련 ▶항공안전법 제38조, 제48조, 제83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, 제104조, 제225조	비중요
6	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	1.교육명령 세부내용(신설) ㅇ 교육명령의 절차, 교육기관(관리기관), 교육내용(법령 및 제도, 서식 작성), 교육시간(2시간 이상), 결과 보고 등 교육명령의 세부내용을 규정 ▶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	비중요
7	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	1.후견인후보자의 요건(신설) ㅇ 후견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민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고 후견사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함 ▶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아크차단기 설치 의무 대상(강화) ㅇ 물류창고,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시설 의무화 (계약용량 100 kW를 초과하는 대규모에만 우선 적용)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214조의2.1	비중요
		2.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 기준(강화) ㅇ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이 주차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함 다만, 지붕 높이가 2.7m 이상인 경우 예외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214조의17	비중요
		3.전동 지게차 전원설비 시설 기준(신설) ㅇ 전동 지게차 전원공급 설비 과전류 차단기,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기준방호장치 설치 등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241조의18	비중요
		4.태양광발전설비 시설 기준(강화) ㅇ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형태별(건물일체형 · 건물부착형 · 수상형) 모듈 및 지지물(부력체)에 대한 일반적인 시설요건 신설 ㅇ 건축물에 시설되는 1,000kW 초과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DC아크차단기 시설요건 신설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522조의1, 제522조의2, 제522조의3	비중요
		5.풍력발전설비 시설 기준(강화) ㅇ 육상 · 해상(고정식, 부유식)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제 · 개정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531조, 제532조, 제533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6.연료전지설비 시설 기준(강화) ㅇ 연료전지설비의 최소한의 안전 요건(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및 환경조건 설정, 사용재료 및 연료전지설비의 보호대책)을 수립하여 안전성을 확보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541조,제542조	비중요
		7.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기준(강화) ㅇ 고압 이상 접지도체 최소 단면적을 구리 16㎟ 이상으로 규정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조의3.1	비중요
		8.배전반, 분전반 시설 기준(강화) ㅇ 배전반, 분전반의 설치를 노출된 장소로 한정 ㅇ 분전반 내부로 물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규정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2조의84	중요
		9.저압의 옥측·옥외 배선 시설 기준(신설) ㅇ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방법 규정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5조의6	비중요
		10.접지시스템의 시설 기준(강화) ㅇ 접지극의 재료로서 동피복 강연선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접지 하고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예외사항을 삭제함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조의2, 제142조의7	비중요
		11.전주외등의 시설 기준(강화) ㅇ LED 등기구 설치 시 전력변환장치까지 연결하는 전선의 굵기에 대한 구체적인 배선기준 규정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4조의103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전기저장장치 사고 발생 시 정보공유(강화) ㅇ 전기저장장치 사고 발생 시 위 정보를 제조사, 관리자, 소유자 및 사고조사기관에 공유하도록 의무를 부과 ▶한국전기설비규정 제512조의1.4	비중요
10	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시 등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개인보호장구 보관 및 유지 의무(신설) o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 · 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 ▶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, 제27조, 제11조	비중요
		2.검지 · 경보설비의 유지 · 관리 의무(신설) o 검지 · 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 및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등 유지 · 관리를 하도록 규정 ▶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, 제28조, 제12조	비중요
		3.긴급세척시설의 성능 유지 의무(신설) o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▶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, 제19조	비중요
11	유해화학물질 제조 ·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시 등, 고시 등, 고시 등 개정안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제조 · 사용설비 설치 기준(신설) o 제조 · 사용설비의 재질, 강도, 통기설비, 화염방지기 설치 기준 마련 – (재료) 제조 · 사용설비는 취급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부식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. 다만, 기존시설* 또는 고시 시행 이전(‘25.8.6.) 설치 · 운영 중인 설비의 경우 추가 안전관리방안(주기적인 두께측정, 경도측정, 열화성 점검, 기밀시험 등)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*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 · 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치 또는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 · 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 – (강도) 제조 · 사용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도록 규정 – (통기설비) 제조 · 사용설비 중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용량의 통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 – (화염방지기) 인화성 유해화학물질 제조 · 사용설비 중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– 다만, 고시 시행 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▶유해화학물질 제조 ·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, 제33조, 제7조	
		2.그 밖에 제조 · 사용 · 저장시설 설치 기준(신설) o 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 · 사용설비의 이송용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도록 규정 – 다만, 공정 특성상 고정된 펌프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▶유해화학물질 제조 ·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, 제36조, 제10조	비중요
		3.개인보호장구 보관 및 상태 유지 의무(신설) o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 · 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 ▶유해화학물질 제조 ·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, 제42조, 제16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검지 · 경보설비에 대한 유지 · 관리 의무(신설) o 검지 · 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 및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등 유지 · 관리를 하도록 규정 ▶유해화학물질 제조 ·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, 제43조, 제17조	비중요
12	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3) 개정안(소방청)	1.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3) 일부개정(강화) o 지하 주차장 화재 시 감지 ·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▶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3) 제8조	비중요
		2.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3) 일부개정(강화) o 전기차 충전구역에 감지 · 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.1.미터 이하로 설치하여 화재시 신속한 진압을 통해 피해 최소화하도록 규정 ▶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3) 제10조	비중요